

## 국토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겨레·뉴시스 등, 2.4) >

- ◆ “감사원 ‘국토부, 시설물 사고 조사 안해’... 지자체 수리 발목” 등
- ◆ “감사원 ‘안전 최하위’ E등급 주택 거주자 342명... 국토부 관리해야”

□ 금번 보도에서 언급된 서울 도림보도육교 붕괴('23.1) 등 7건의 붕괴 사고는 **현행 규정상 국토교통부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 사고 범위가 아니나,**

\* (**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**) 1.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물 피해, 2.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,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피해 또는 인명피해 (**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**) 시설물의 붕괴·파손 등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○ 2008년 이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사고가 없었던 점, 현행 규정상 사고조사 대상 범위가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**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「시설물안전법 시행령」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**입니다.

□ 또한, 국토교통부는 '24.10월 E등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으며, 지자체·국토안전관리원 등과 동절기 대비 **합동점검('24.10.28~11.22)**을 실시하였습니다.

□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담시설물 선정 기준 개선, FMS (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) 미등록 시정 등 **감사원 지적사항 전반에 대해서 연내 개선을 추진할 예정**입니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	문봉섭 (044-201-4598)
	시설안전과	담당자	사무관	구단일 (044-201-3587)